

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 번호 | 19356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6. 6. 19.

발 의 자 : 윤준병 · 이정문 · 박민규
이성윤 · 주철현 · 김동아
임미애 · 양부남 · 박희승
안호영 · 홍기원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하되, 공무원연금·사학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과 배우자의 경제적 생활 여건이나 직역연금 수급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직역연금 수급권 유무에 따라 배우자의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함.

이에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의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되, 기초연금 미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(안 제3조제3항 등).

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”를 “수급권자 또는”으로,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”을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(이하 이 조에서 “기초연금 미수급자”라 한다)에게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기초연금 미수급자의 배우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미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<p>제3조(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④ (생략)</p> | <p>제3조(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수급권자 또는----- ----- ----- -----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(이하 이 조에서 “기초연금 미수급자”라 한다)에게는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기초연금 미수급자의 배우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미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.</p> <p>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</p> |